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Ⅱ)

編輯者 註

다음은 지난 95. 10. 日本 國會에서 通過된 日本의 新 食糧管理法인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을 入手하여 翻譯한 것입니다. 모두 3회에 나누어 掲載하오니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호에 이어)

法 律 全 文

目 次

第3節 政府收買 및 賣渡등(第59條~第65條)	24
第3章 麥類 기타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圖謀하기 위한 措置(第66條~第71條)	27
第4章 雜 則(第72條~第83條)	29
第5章 罰 則(第84條~第92條)	33
附 則(第1條~第21條)	34

第3節 政府의 收買 및 賣渡等

第59條(米穀의 政府收買) ① 政府는 米穀 備蓄의 圓滑한 運營을 圖謀하기 爲해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生産調整實施者 또는 生産調整實施者로 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委託을 받은 者의 賣渡申請에 應하여 生産한 米穀을 買入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收買價格(以下 이 條에서 「政府收買價格」이라 한다)은 法令에 의해 定하는 바에 따르고 農林水產大臣이 自主流通米의 價格動向 기타 米穀의 需要 및 供給動向을 反英시키는 反面 生産條件 및 物價 기타 經濟事情을 參考하여 米穀의 再生産을 期하는 뜻을 定하는 것으로 한다.

③ 農林水產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해 政府收買價格을 定하고자 할 때에는 法令에서 定한 審議會의 意見을 聽取하여야 한다.

④ 農林水產大臣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해 政府收買價格을 定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公示하도록 한다.

⑤ 農林水產大臣은 物價 기타 經濟事情이 顯著히 變動이 발생하고 또는 生길 憂慮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特히 必要하다고 볼 때에는 政府買收價格을 改正 할 수 있다.

⑥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買入價格의 改正에 있어서 準用한다.

第60條(米穀등의 輸入을 目的으로 한 買入) ① 政府는 米穀등(米穀 및 米穀을 加工 또는 調製한 것으로 法律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項 第62條 및 第63條에 있어서도 같다.)의 輸入을 目的으로 한 買入을 할 수 있다.

② 政府는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前項의 米穀등의 收買를 다른사람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1條(米穀의 政府賣渡) ① 政府는 政府米를 登錄都賣業者 기타 法令으로 定하는

者에 對해 隨意契約에 의해 賣渡할 수 있다. 다만, 農林水産大臣이 隨意契約이 適合하지 않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入札方式을 一般競争契約 또는 指名競争契約중 農林水産大臣이 選擇하는 競争契約에 의해 賣渡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해 賣渡할 경우의 豫定價格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標準賣渡價格을 基準으로 定한다.

③ 前項의 標準賣渡價格은 法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大臣의 米穀의 需要 및 供給動向, 家計費 또는 物價 기타 經濟事情을 參酌하여 消費者의 家計를 安定시키는 뜻으로 정한다.

④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해 標準賣渡價格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法令으로 정한 審議會의 意見을 聽取하여야 한다.

⑤ 農林水産大臣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해 標準賣渡價格을 정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農林水産省令에서 定한 米穀에 對해서 이를 告示하도록 한다.

⑥ 農林水産大臣은 物價 其他 經濟事情에 顯著한 變動이 發生 또는 發生할 憂慮가 있을 경우에는 特別히 必要가 있다고 認定된 때에는 標準賣渡價格을 改正할 수 있다.

⑦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賣渡價格의 改正에 있어서 準用한다.

⑧ 前條 第1項의 輸入을 目的으로 하는 買入 또는 第65條2項의 경우에 있어서의 買入에 관계되는 米穀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해 賣渡할 경우의 價格은 國際規約에 따라 農林水産大臣이 정해 告示하는 金額이 當該米穀의 買入價格에 加算한 金額을 超過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2條 (輸入에 關係되는 米穀등의 特別한 方式에 의한 買入 및 賣渡) 政府는 米穀 등의 輸入을 行하고자 하는 者 및 當該輸入에 관한 米穀등의 買受를 行하고자 하

는 登錄都賣業者 其他 法令에서 정하는 者(다음項에 있어서는 「賣渡資格者」라 한다.)의 連名에 의한 신청에 應하여 當該輸入에 관한 米穀등을 買入할 수가 있다.

② 政府는 前項의 規定에 의해 買入한 米穀등을 同項의 신청을 買受資格者에 對해 當해신청에 應해 賣渡할 수가 있다.

③ 前項의 規定에 의한 賣渡에는 前條 第1項부터 第7項까지(第1項 本文은 除外)의 規定은 適用되지 않으며 同 條第1項本文중 「政府米를 登錄都賣業者 其他 法令으로 定한 者」라고 된 것을 「다음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해 買入한 米穀등을 同項의 申請을 한 買受資格者」로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해 買入한 米穀 등을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賣渡하는 경우의 價格은 國際規約에 따라서 農林水産大臣이 정하여 告示하는 金額이 當該米穀등의 買入價格에 加算된 金額을 超過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3條(米穀등 輸出을 目的으로 한 賣渡) ① 政府는 特히 必要가 있다고 간주되었을 때에는 米穀등의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賣渡를 行할 수 있다.

② 第60條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米穀 등의 賣渡에 있어서 準用한다.

第64條(政府賣渡의 附帶條件등) ① 農林水産大臣은 前3條의 規定에 의해 米穀을 賣渡하는 경우에 賣渡에 관계되는 米穀의 讓渡 또는 使用에 關係 그 時期 相對方등의 制限 其他 必要한 條件을 附加할 수 있다.

②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이 附加된 米穀의 賣渡를 받는 者가 그 條件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當該 違反에 관한 米穀의 賣渡價格에 農林水産大臣이 정한 比率를 곱하여 얻은 金額에 相當하는 金額의 違約金을 徵收 할 수 있다.

第65條(米穀의 輸入 또는 輸出의 許可) ① 米穀의 輸入 또는 輸出을 行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에 揭記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農林水産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農林水産大臣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第60條 第2項(第63條 第2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委託을 받은 경우
2.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連名の 申請에 應하여 行하는 政府의 買入 및 賣渡에 관한 米穀을 輸入하는 경우
3. 기타 法令으로 定하는 경우
 - ② 前項의 許可를 받아 米穀을 輸入한 者는 國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惡影響을 招來할 憂慮가 없다고 法令으로 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輸入米穀을 政府에 賣渡하여야 한다.
 - ③ 前項의 경우에 있어서 政府의 買入價格은 當該米穀의 輸入價格을 基準으로하여 農林水産大臣이 定한다.
 - ④ 第3項에 規定하는 것 以外 第1項의 許可에 關해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省令으로 定한다.

第 3 章 麥類 其他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한 措置

- 第66條(麥의 政府買入)** ① 政府는 法令이 定하는 바에 달 麥類를 그 生産者 또는 그 生産者로 부터 委託받은 者의 賣渡申請에 應하여 無制限 買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買入 價格(다음 項에 있어서 「政府買入價格」이라 한다)은 法令으로 定하는바에 따라 農林水産大臣이 麥類 生産費 기타 生産條件, 麥類需要와 供給動向 및 物價, 其他經濟事情을 參酌하여 麥類의 再生産을 確保할 취지로 定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國內에서의 麥作의 生産性 向上 및 國內生産麥類의 品

質改善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第67條(麥 등의 輸入을 目的으로 하는 買入) ① 政府는 麥類 등(麥 其他 法令으로 정하는 것 및 이를 加工 또는 調製한 것으로 法令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다음 項, 第69條 및 第70條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이 輸入을 目的으로 한 買入을 行할 수 있다.

③ 第60條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麥類 등의 買入에 對해서 準用한다.

第68條(麥類의 政府賣渡) ① 政府는 保有하고 있는 麥類를 隨意契約에 의해 賣渡할 수 있다. 다만 農林水産大臣이 隨意契約이 부적합하다 간주할 경우에는 入札方式을 一般競争契約 또는 指名競争契約중 農林水産大臣이 選擇하는 競争契約에 의해 賣渡할 수 있다.

② 第61條 第2項부터 第8項까지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賣渡에 對해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同條第3項중 「米穀의 需要 및 供給動向, 家計費 또는 物價 其他 經濟事情」이라 한 것을 「家計費 및 米價 其他 經濟事情」으로 變更 解讀하도록 한다.

第69條(準用) 第63條의 規定은 麥類 등의 賣渡에 對하여 第64條의 規定은 麥類의 賣渡에 對해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同條第1項중 「前3條」로 된 것은 「前條 및 第68條」로 變更 解讀하는 것으로 한다.

第70條(麥類 등의 輸入) ① 麥類 등의 輸入(關稅法(昭和 29年 法律 第61號) 第2條에서 定한 輸入을 말한다. 以下 이 項에 있어서 같다.)을 行하고자 하는 者는 國際規約에 따라서 農林水産大臣이 定하여 告示하는 金額에 當該輸入에 관한 麥類 등의 數量을 공급하여 얻은 金額을 政府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第67條 第2項에 對해 準用하는 第6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해 政府의 委託을 받아 輸入하는 경우 또는 國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惡影響을 招來하지 않은 것으로 法令에서 定한 麥類 등을

輸入하는 경우에는 이에 限하지 않는다.

② 前項의 納付金の 受領은 關稅法 第70條 第1項의 許可·承認등으로 본다.

③ 第1項의 納付金の 納付手續 기타 納付金에 관한 必要한 事項은 法令으로 定한다.

第71條(米穀 및 麥類以外の 主要食糧의 買入 및 賣渡) ① 政府는 第60條, 第62條 및 第67條의 規定 以外에 米穀 및 麥類以外 主要食糧의 買入을 行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第62條의 規定이외에 保有하고 있는 米穀 및 麥類以外の 主要食糧의 賣渡를 行할 수 있다.

③ 第60條第1項 또는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해 買入한 米穀 및 麥類이외의 主要食糧에 對한 前項의 賣渡를 行할 경우의 價格은 國際規約에 따라 農林水產大臣이 定해서 告示한 金額을 當該米穀 및 麥類이외의 主要食糧의 買入價格에 加算한 金額을 超過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4 章 雜 則

第72條(主要食糧의 交付등) 政府는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主要食糧을 交付 또는 貸付를 行할 수 있다.

② 政府는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主要食糧의 貯藏·交換·加工 또는 製造 등을 行할 수 있다.

第73條(情報의 提供) 政府는 主要食糧의 適切하고 圓滑한 流通確保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條의 調査結果, 기타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에 관한 必要한 情報 提供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74條(調査) 農林水產大臣은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기하기 위해 農林水

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主要 食糧의 生産·流通 및 消費狀況에 관한 調査를 行할 수 있다.

第75條(報告 및 立會檢査) ① 農林水産大臣은 이 法律의 施行에 必要한 限度에 있어서 自主流通法人·登錄出荷取扱業者·登錄都賣業者·登錄小賣業者 혹은 센터·其他業으로서 主要食糧의 販賣·輸入·加工 또는 製造를 行하는 者에 對하여 그 業務 혹은 資産 狀況에 관한 報告를 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職員에게 이들의 事務所·營業所·販賣所·事業所·倉庫 혹은 工場에 立會하여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其他 物件을 檢査케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에 對한 質問을 시킬 수 있다.

② 都·道·府·縣知事は 이 法律의 施行에 必要한 限度에 있어서 登錄都賣業者 혹은 登錄小賣業者 其他業으로서 主要食糧의 販賣·加工 또는 製造를 行하는 者에 對해 그 業務 또는 資産狀況에 관해 報告하도록 하고 또한 이들의 事務所·營業所·販賣所·事業所·倉庫 혹은 工場에 立會하여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其他物件을 檢査케 하고 또 關係者에 對한 質問을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해 立會檢査를 하는 職員은 그 身分을 證明하는 證明書を 携帶하여 關係者에 提示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立會檢査의 權限은 犯罪調査를 하기 위한 것으로 解析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6條(權限의 委任) 農林水産大臣은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律에 基礎하는 權限의 一部를 地方公共團體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77條(異義의 成立) ①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出荷基準數量의 決定에 관한 處分에 對하여는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不服審査法(1962年 法律 第160號) 第45條의 期間에 對한 特例를 認定할 수 있다.

② 前條의 規定에 의한 委任에 基因하는 處分에 對해서는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不服審査法에 의한 異義成立을 할 수 있다.

第78條(不服成立과 訴訟과의 關係)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出荷基準數量的 決定에 관한 處分取消의 訴訟은 當該處分에 對한 審査請求 또는 이의성립에 對한 裁決 또는 決定된 後가 아니면 提起할 수 없다.

第79條(經過措置) 이 法律의 規定에 따라 命令을 制定 또는 개폐할 경우에 있어서 는 그 命令으로 그 制定 또는 개폐에 따라 合理的이고 必要한 것이라고 判斷되는 範圍內에 所要되는 經過措置(罰則에 관한 經過措置를 포함함)을 定할 수 있다.

第80條(緊急時的 對應) ① 政府는 米穀의 供給이 크게 不足 또는 不足할 考慮가 있을 微候가 있어서 基本計劃에 立脚한 米穀의 適切하다고 또 圓滑한 供給이 相當期間 極히 困難하게 됨에 따라 國民生活의 安定 및 國民經濟의 圓滑한 運營에 顯著히 支障이 發生 또는 發生할 憂慮가 있을 경우에는 그 事態에 對處하기 위해 다음 條부터 第83條까지 規定하는 措置를 講究할 必要가 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閣議의 決定을 얻어 그 要旨를 告示토록 한다.

② 政府는 前項이 規定하는 事態가 消滅되었다고 간주되었을 때에는 즉시 閣議의 決定을 거쳐 그 要旨를 告示한다.

第81條(自立流通法人등에 對한 命令) ① 農林水産大臣은 前條第1項이 規定한 事態에 對處하기 爲해 自主流通法人·登錄出荷取扱業者·登錄都賣業者 또는 登錄小賣業者에 對하여 그가 保有하는 米穀의 讓渡·移動 또는 保管에 관해 地域 또는 時期의 指定·數量 및 價格의 制限에 服從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따라 行해진 米穀의 讓渡 또는 保管에 對하여는 그 範圍內에 있어서 自立流通計劃의 變更通報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82條(米穀生産者에 對한 指示등) ① 農林水産大臣은 前條에서 規定한 措置를 講究하였음에도 여전히 米穀이 적절하고 또 圓滑한 供給을 期하는데 困難하다고 간

주되었을 때에는 米穀生産者에 對하여 賣渡하여야 할 期限 및 數量을 정하고 生産한 米穀으로서 當該米穀의 生産者에 관계되는 計劃出荷標準數量의 範圍內的 것을 農林水産大臣이 指定하는 第1種 登録出荷 取扱業者에 賣渡할 것을 指示할 수 있다.

②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해 指示받은 米穀生産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그 指示에 不應하였을 때에는 當該米穀 生産者에 對해 賣渡하여야 할 期限 및 數量을 정하여 生産한 米穀으로서 當該米穀 生産者에 관계되는 計劃出荷 基準數量의 範圍內的 것을 政府에 賣渡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③ 前項의 경우에 있어서 政府의 買入 價格은 第59條第2項의 政府買入 價格에 준하여 農林水産大臣이 정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示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의해 행하여진 米穀의 賣渡에 있어서 前條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示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命令에 의해 行하여진 賣渡에 관한 米穀에 있어서는 第5條第4項 및 第14條의 規定은 適用치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當該賣渡에 관한 米穀에 있어서 이미 違法되어 있는 出荷契約은 當事者의 貴責事由가 되지 않아 解消된 것으로 본다.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해 生産調整 實施者以外の 米穀生産者로 부터 政府가 買入한 米穀의 賣渡에 있어서는 第61條第1項 乃至 第7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3條(米穀의 配定 또는 配合등) ① 前2條에서 規定한 措置에도 不拘하고 第80條 第1項에서 規定한 事態를 克服한다는 것이 顯著하게 困難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있어서는 法令으로 米穀의 配定 혹은 配合 또는 米穀의 使用·讓渡·讓與의 制限 또는 禁止에 關해 必要한 事項을 定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法令으로 정하는 事項은 그 事態를 克服하기 위해 必要한 限度를 超過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5 章 罰 則

第84條 第8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百萬元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85條 다음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百萬元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自主流通法人이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停止命令에 違反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違反한 自主流通法人의 任員 및 職員
2. 第65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農林水産大臣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米穀을 輸入 혹은 輸出을 行한 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3.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違反한 者

第86條 第56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0萬元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87條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萬元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農林水産大臣의 出荷取扱業 登錄을 받지 아니하고 出荷取扱業을 行한 者
2. 第19條(第27條第1項, 第41條第1項 또는 第47條第1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경우도 포함)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違反한 者
3. 都·道·府·縣知事의 販賣業登錄을 받지 아니하고 販賣業을 行한 者

第88條 第18條(第27條第1項, 第41條第1項 또는 第47條第1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경우도 포함)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違反한 者는 30萬元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89條 第75條第1項 혹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怠慢 또는 虛偽報告를 하거나 또는 이같은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는 20萬元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90條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 혹은 代理人·使用人·其他 從業人이 그 法人 또는 自然人的 業務에 關係 第84條乃至 前條까지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에게 處罰을 加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사람에 對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을 병과할 수 있다.

第91條 第84條第1項의 規定에 依거한 法令은 그 法令 혹은 이에 根據한 命令의 規定 또는 이것들에 依한 處分에 違反한 者를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百萬엔 以下の 罰金에 處하고 또한 이를 併科하는 要旨의 規定 및 法人의 代表者·法人·사람의 代理人·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사람의 業務에 關係 當該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사람에 對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하는 要旨의 規定을 定할 수 있다.

第9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0萬엔以下の 過怠料에 處한다.

1. 第5條第1項前段의 規定을 違反한 者
2. 第5條第5項, 第11條第2項(第27條第1項, 第41條第1項 또는 第47條第1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경우도 포함) 第12條(第27條第1項, 第41條第1項 또는 第47條第1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第13條(第27條第1項, 第41條第1項 또는 第47條第1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경우도 포함)의 規定에 依한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偽提出을 한 者
3. 第16條第1項(第27條第1項, 第41條第1項 또는 第47條第1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경우도 포함)의 規定을 違反한 者

附 則

第1條(施行期日) 이 法律은 公布日로부터 起算하여 1年을 超過하지 않은 範圍內에 法令으로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揭記한 規定은 各各 當該

各號에서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1. 第60條, 第61條第8項, 第62條·第63條·第65條·第67條·第68條第2項중 第61條第8項의 準用에 관한 部分, 第69條중 第63條의 準用에 관한 部分, 第70條, 第71條第3項, 第85條(第2號에 관한 部分에 限함) 및 第90條중 第85條 第2號에 관한 部分의 規定 및 附則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 附則 第10條, 附則 第13條(食糧管理特別會計法(1920年 法律第37號)第1條의 改正規定중 「食糧管理」를 「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으로 改正한 部分을 除外함) 및 附則 第16條의 規定 1995年 4月 1日(世界貿易機關을 設立하는 마라케쉬協定이 日本國에 있어서 效力을 發生하는 날이 1995年 4月 1日 以後가 될 경우에는 當該協定이 日本國에서 發效되는 날 以後 法令으로 정하는 날)
2. 附則第2條, 附則第4條, 附則第11條(附則第2條에 관한 部分에 限함) 및 附則第12條의 規定 1995年 4月 1日(世界貿易機關을 設立하는 마라케쉬協定이 日本國에 있어서 效力이 發生하는 날이 1995年 4月 1日 以後가 될 경우에는 法令으로 정하는 날)

第2條(食糧管理法의 一部改正) 食糧管理法(1973年 法律 第40號)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削除

第11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 削除

第32條第1項第1號중 「또는 第11條第2項」을 削除하고 同條第1項第4號 및 同條第1項을 削除한다.

第3條(食糧管理法의 廢止) 食糧管理法은 廢止한다.

第4條(政府의 賣渡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第1條第1號에 揭記하는 規定의 施行日이 이 法律施行日前일 경우에는 이 法律의 施行日까지 期間에 있어서 同號에 揭記된 規定의 適用에 對하여는 第61條第8項중 「第1項의 規定」으로 된 것은 「食糧管理法 第4條第1項의 規定」으로 第62條第1項중 「登錄都賣業者 기타 法令으로 정하는 者」라 된 것을 「食糧管理法第8條의 3第1項의 許可를 받아 米穀의 都賣業務를 行하는 者 또는 政府가 指定하는 者」로 同條第3項중 「前條 第1項부터 第7項까지(第1項本文을 除外함)라 된 것을 「食糧管理法第4條 第1項本文을 除外) 및 第5條」로 하고 「同條第1項 本文중 「政府米를 登錄都賣業者 기타 法令으로 정하는 者」라고 하는 것은 「다음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해 買入한 米穀등을 同項의 申請을 行한 買受資格者」로 된 것은 「同法第4條第1項중 「그 買入한 米穀」으로 된 것을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법률 第62條第1項의 규정에 의해 買入한 米穀등」으로 「第8條의 3第1項의 許可를 받아 米穀의 都賣業務를 行하는 者 또는 政府가 指定하는 者」라는 것을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第62條第1項의 申請을 한 買受資格者」로 하여 第68條第2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第61條第8項중 「第1項의 規定」으로 한 것을 「食糧管理法第4條의3第1項의 規定」으로 하고 第71條第3項중 「前項」이라고 한 것은 「食糧管理法第5條第1項」으로 한다.

第5條(舊法의 定的效力) 世界貿易機關을 設立하는 마라케슈協定이 日本國서 發效되는 날이 이 法律의 施行日以後가 될 경우에는 이 法律에 의해 廢止하게 될 食糧管理法(이하 舊法이라 한다)의 附則第2條에 의한 改正前의 第6條·第11條 및 第32條중 第11條에 관한 部分의 規定 또는 舊法第37條의 規定은 附則第1號의 法令이 定하는 날까지는 그 效力을 가진다.

第6條(基本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① 附則第1條第1號에 揭記된 規定의 施行日以後 第4條의 規定에 따라서 最初로 基本計劃이 정하게 될 때까지에 있어서 農林水

産大臣은 法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米穀輸入의 實施에 관한 計劃(다음 項에서는 「輸入計劃」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 法律의 施行日(附則第1條第1號에 揭記한 施行日이 이 法律의 施行日 以後일 경우에는 同號에 揭記한 規定의 施行日)以後에 있어서는 輸入計劃을 第4條의 規定에 따라서 정하여진 基本計劃의 一部로 간주한다.

③ 이 法律의 施行日 以後 第4條의 規定에 따라서 最初의 基本計劃이 정하여질 때까지에 있어서는 舊法第2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米穀管理에 관한 基本計劃 및 舊法第8條의 規定에 따라 정해진 米穀의 供給에 관한 實施計劃을 第4條의 規定에 따라 정한 基本計劃으로 본다.

第 7 條(出荷取扱業의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律施行時 이미 舊法第8條의 2第1項의 指定을 받은 者는 이 法律施行日부터 8月間은 第6條第1項의 登錄을 畢한 者로 본다. 그 者가 그 期間內에 當該登錄의 申請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期間을 經過하였을 때는 그 申請에 따른 登錄 또는 登錄拒否處分이 있을 때까지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律施行時 이미 舊法第8條의 2第1項의 指定을 받은 者는 이 法律의 施行日부터 8月間은 第35條第1項의 登錄을 畢한 것으로 본다. 그 者가 그 期間內에 當該登錄을 申請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期間이 經過하였을 때에는 그 申請에 따르는 登錄 또는 登錄拒否處分이 있는 날까지 前段과 같은 것으로 본다.

第 8 條(出荷取扱業登錄의 取消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舊法第8條의 2第5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取消는 第9條第1項 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適用에 관해서는 第19條(第27條第1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경우도 포함)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로 본다

② 舊法の 規定에 따른 食糧管理法施行令(1947年 法令第330號) 第1條의 4第3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取消은 第28條第2項의 規定第適用에 관해서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取消로 본다.

③ 舊法第8條의 3第3項에서 準用하는 舊法第8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은 第38條第1項 또는 第44條第1項의 規定適用에 관해서는 第41條第1項 또는 第47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해 登錄取消로 본다.

④ 舊法 또는 이에 基因하는 命令의 規定을 違反하여 罰金以上刑에 處해진 者は 第9條第1項, 第24條第1項, 第28條第2項, 第38條第1項 또는 第44條第1項의 規定適用에 관해서는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한 罰金以上刑에 處해진 것으로 본다.

第9條(自主流通法人 指定의 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받고자 하는 法人은 이 法律施行日 以後에 있어서도 그 申請을 할 수 있다. 第30條第1項의 自主流通計劃의 認可申請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②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받고자 하는 法人은 이 法律의 施行日前에 있어서도 그 申請을 할 수 있다. 第50條第1項의 業務規定의 認可申請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第10條(麥類輸入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第1第1號에 揭記된 規定의 施行日前에 舊法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해 輸入許可를 받은 麥類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政府에 賣渡하기 爲한 契約을 한 것은 第67條의 規定에 의해 輸入한 것으로 본다.

第11條(罰則의 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律(附則 第2條 대해서는 同條 附則 第5條의 規定에 의해 아직 效力을 갖고 있다는 規定에 관해서는 附則 第1條第1號에 揭記한 規定)의 施行前에 行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대해서는 아직 從前의 例에 따른다.

第12條(法令에 委任) 第4條부터 前條까지 規定하는 것 이외 이 法律의 施行에 관한 필요한 經過措置는 法令으로 정한다.

第13條(食糧管理特別會計法의 一部改正) 食糧管理特別會計法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食糧管理」를 「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으로 하고 「貯藏」다음에 「또는 麥類등의 輸入에 관한 納付금이 受入」을 新設한다.

第6條중 「賣渡代金」다음에 「麥類등(飼料用을 除外)의 輸入에 관한 納付金」을 新設하고 同條에 다음 2項을 新設한다.

前項에서 정한 國內米 管理計定에 대해서는 輸入 食糧 管理計定부터의 收入金を 가지고 그것의 歲入으로 하고 輸入 食糧 管理計定에 있어서는 國內米 管理計定에 대한 損入金을 가지고 그것의 歲出로 한다.

前項의 國內米 管理計定에 대한 收入金은 同計定에 對한 備蓄에 관한 損失을 보전하기 爲한 輸入食糧管理計定에서 輸入에 관한 米穀등의 賣買에 의해 얻어지는 利益額을 國內米 管理計定の 비축에 관한 손실액을 限度로 한 豫算이 定하는 바에 따라 輸入 食糧 管理計定부터 이를 收入하는 것으로 한다.

第6條의2의2중 「賣渡代金」다음에 「麥類등(飼料用에 限함)의 輸入에 관한 納付金」을 新設한다.

第14條(食糧緊急措置令의 廢止) 食糧緊急措置令(1946年 同令第86號)는 廢止한다.

第15條(米穀의 政府買入價格에 對한 特例에 관한 法律의 一部改正) 米穀의 政府買入價格에 對한 特例에 관한 法律(1952年 法律第136號)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食糧管理法(1942年 法律案 40號) 第3條第2項」을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1994年 法律第 號)第59條第2項」으로 한다.

第16條(飼料需給安定法의 一部改正) 飼料需給安定法(1952年 法律第356號)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중 「의거하여 食糧管理法(1942年 法律第40號) 第11條第2項」을 「의거하여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1994年 法律第 號)第67條第1項」으로 을「買入하는 外」를 「의 輸入을 目的으로 하는 買入하는 以外」로 하고 「以下 이 條」를 「다음項 第5條第2項」으로 改正한다.

第5條第4項중 「賣渡」를 「賣渡하고」로 「食糧管理法第4條의3第1項의 規定」을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第68條2項에 對해 準用하는 同法第61條第2項부터 第7項까지의 規定」으로 한다.

第17條(經濟關係罰則의 整備에 관한 法律의 一部 改正) 經濟關係罰則의 整備에 관한 法律(1994年 法律第4號)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甲號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削除

第18條(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의 適用除外등에 관한 法律의 一部 改正) 私的獨占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의 適用除外등에 관한 法律(1947年 法律第138湖)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削除

第19條(住民基本台帳法의 一部 改正) 住民基本台帳法(1962年 法律第81號)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2號중 「食糧管理法(1942年 法律 第40號)第8條의 4」를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1994年 法律第 號)第83條第1項」으로 한다.

第20條(地價稅法의 一部 改正) 地價稅法(1991年 法律第69號)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第21號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1994年 法律第 號)第59條第1項(米穀의 政府買入), 第60條第1項(米穀등의 輸入을 目的으로 하는 買入)第62條第1項(輸入에 관한 米穀등의 特別한 方式에 따른 買入 및 賣渡) 第65條第2項(米穀의 輸入 또는 輸出의 許可), 第66條第1項(麥類의 政府買入)또는 第67條第1項(麥類등의 輸入을 目的으로 하는 買入)의 規定에 의거하여 政府가 買入한 米穀 또는 麥類를 保管하기 위한 施設

第21條(農林水産省設置法의 一部 改正) 農林水産省設置法(1949年 法律第153號)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95號중 「統制」를 「安定」으로 한다.

第5條第6號중 「主要食糧의 使用, 加工·讓渡·讓受 또는 引渡」를 「米穀의 使用, 讓渡 또는 讓受」로 하고 同條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米穀의 讓渡·移動 또는 保管에 관해 命할 것

第5條第46號을 다음과 같이 한다.

46. 米穀의 賣渡를 指示 또는 命할 것

第22條第1項중 「國家管理 및」을 「需給 및 價格安定을 도모함과 동시에」로 한다.

事由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圖謀하기 위해 또 世界貿易機關을 設立하는 마라캣슈協定の 實踐을 期하고 生産調整을 圓滑히 推進하여 備蓄物量의 機動的 運用 및 米穀의 適正하고 圓滑한 流通·確保를 圖謀하기 위한 措置와 아울러 政府에 의한 主要食糧의 買入·輸入 및 賣渡등 措置를 綜合的으로 研究하는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이 法律案을 提出하는 理由이다.